

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

제정 2021. 6. 18 훈령 제421호
일부개정 2023. 10. 10 훈령 제439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일부개정 2023. 12. 29 훈령 제44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5조에 따라 광명시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사업장 내에서 작업의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은 「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 행정기관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「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」 고시 별표 1의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“근로자”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시장의 의무) ①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각 사업장 해당 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·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, 기계,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·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4조(근로자의 의무)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련된 각종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

제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. <개정 2023. 10. 10, 2023. 12. 29>

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8.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제6조(관리감독자) ① 시장은 근로자의 현장업무 지휘·감독 부서의 장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.

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리감독자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
4.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6.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7.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제7조(안전관리자)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,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,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

안전관리자를 둔다.

② 안전관리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
2.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
3.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
4. 안전사고의 조사, 원인분석, 예방책의 마련, 기록 관리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
5. 안전점검,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
6.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
7.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8.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교육·지도 및 점검
9.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
10. 작업장 정리·정돈
11. 보건관리자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
12.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8조(보건관리자)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,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,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.

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
2.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
3.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
4.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
5.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
6.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

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광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)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) 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근로자위원은 시 공무원 근로자 대표 및 그가 지명하는 3명 이하의 근로자
2.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에 관리감독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.

제10조(위원회의 활동보장)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.

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은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
8.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3조(회의결과 공지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전자게시판, 노동조합 회보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안전보건교육

제14조(안전보건교육) ① 시장이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교육: 근로자,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
2. 채용 시 교육: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
3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: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

야 하는 교육

4. 특별교육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

②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,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장 안전관리

제15조(방호조치)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,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방호조치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, 방호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업장의 안전조치)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
1.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
2.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
3.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
4. 작업용구,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적정 여부
5.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

제17조(위험물질 관리)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

제18조(작업중지)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·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 중지, 대피 등 즉시 필요한 안전·보건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,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9조(안전표지·수칙)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건관리

제20조(근로자 건강진단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건강진단의 종류·시기·주기·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21조(보건표지·수칙)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2조(근로금지 및 취업제한) 시장은 감염병,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건강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,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(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),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복직 및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.

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
제23조(재해발생 시 긴급조치)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

당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(사고조사 및 보고) ①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,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.

④ 시장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,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재해분석 및 대책)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.

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.

제26조(위험성평가)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,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)」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③ 시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·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0. 10 훈령 제439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행정재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12. 29 훈령 제441호>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